

탄소중립기본법령의 주요내용과 시사점

I.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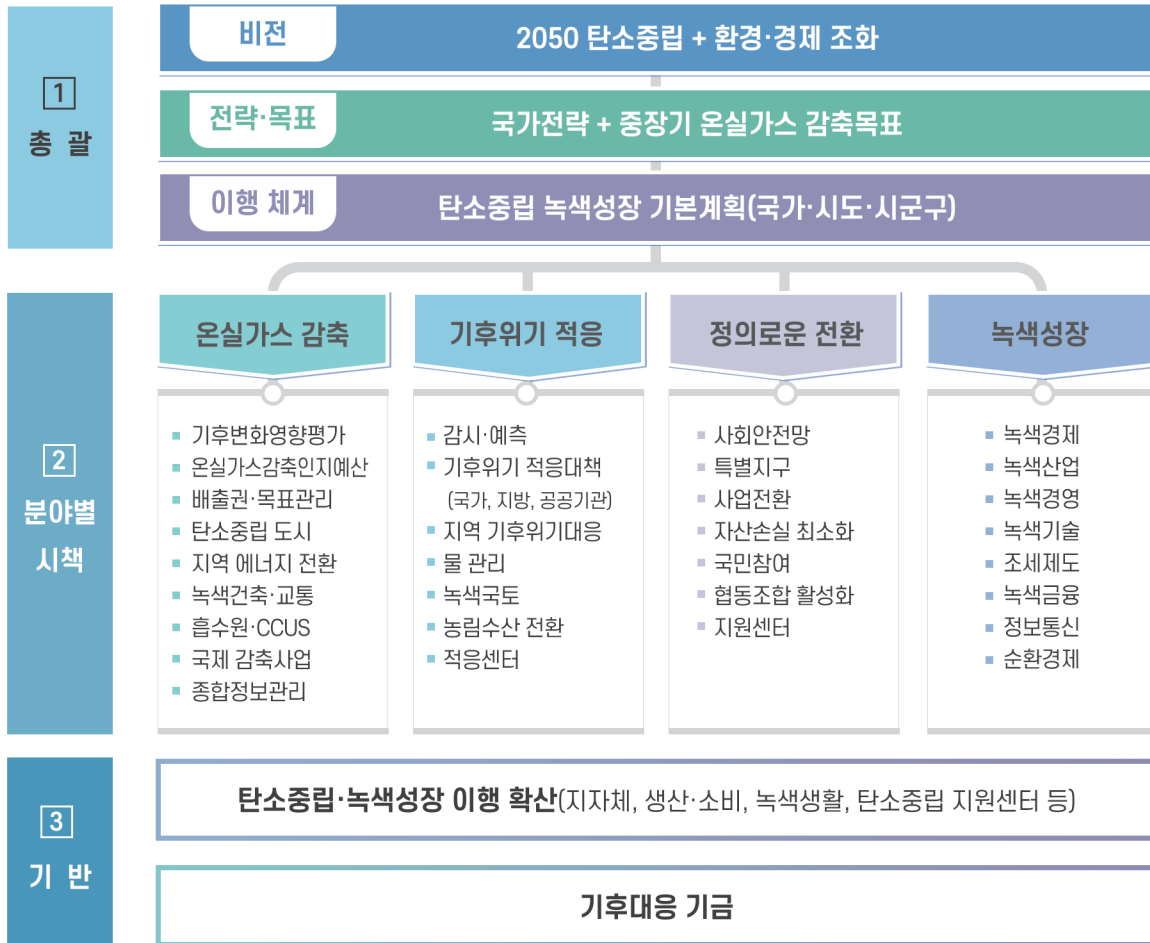
- **제명**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(약칭 ‘탄소중립기본법’)
- **의의** ‘2050 탄소중립’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절차 및 정책수단을 규정한 법률 및 하위법령

입법 추진경과

- ▷ **법률** 제정·공포(2021. 9. 24.) 및 시행(2022. 3. 25.)
- ▷ 관계부처 협의(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)를 통해 하위법령(시행령)안 마련
- ▷ **시행령** 국무회의 의결(2022. 3. 22.) 거쳐 제정(2022. 3. 25.)함으로써 법체계 완비

탄소중립기본법령 체계

- ▷ **총괄** 2050 탄소중립 및 중·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, 기본계획 등
- ▷ **4대 시책** 온실가스 감축, 기후위기 적응, 정의로운 전환, 녹색성장
- ▷ **기반** 탄소중립·녹색성장 이행 확산, 기후대응 기금 신설





II. 주요내용

1 총괄

□ 2050 탄소중립 비전 및 이행체계 구축

- **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**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률로써 명시
- **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**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*를 2018년 대비 40%로 대폭 상향**하여 명문화
 - *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; NDC):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참가국이 스스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
 - ** 2019년 NDC를 2017년 대비 24.4%로 책정 → 2021년 NDC를 2018년 대비 40%로 확대
- **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**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·점검
 - ※ 정부는 계획기간 20년의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(수립주기 5년), 지자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계획기간 10년의 시·도 및 시·군·구 기본계획 수립
- **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**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민·관 거버넌스로서 위원회 설치·운영
 - ※ 탄소중립 주요 계획 및 정책 심의·의결, 추진현황 및 성과 점검 수행

2 분야별 시책

□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시책

▶ 기후변화를 완화*하고자 국가 주요계획, 대규모 개발사업,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 유도

* 기후변화 완화(mitigation): 기후변화의 주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온실가스 흡수원을 증가시키는 대응

- **기후변화영향평가**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·사업*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('22. 9. 이후 단계적 도입)
 - * 온실가스 다량 배출하는 등 계획·사업으로 10개 분야 83개 사업 선정
- **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**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 편성 시 반영, 결산 시 집행의 적정성 평가('23.부터 적용)



- **기타** 배출권거래제, 온실가스 목표관리, 탄소중립 도시, 지역 에너지 전환, 녹색건축물, 녹색교통, 탄소흡수원, 탄소포집·이용·저장*, 국제 감축사업,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등

* 탄소포집·이용·저장(Carbon Capture, Utilization, Storage; CCUS): 이산화탄소(CO₂) 발생원으로부터 이를 포집하여 안전하게 저장하거나 직접 전환하여 활용하는 기술

□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원 시책

- ▶ 심화되는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응*

* 기후변화 적응(adaptation): 온실가스 대배출로 변화하는 기후 시스템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

- **기후위기 감시·예측** 기후위기 감시·예측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기상정보관리체계 구축·운영(기상청), 기후위기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조사·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·운영(환경부)
- **기후위기 적응대책** 국가 차원에서 취약성 평가, 취약계층·지역 재해예방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·점검

※ 지자체(시·도 및 시·군·구) 및 공공기관(취약기관*)까지 기후위기 적응대책 확대

* ‘취약기관’이란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·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①교통·수송 분야(도로, 철도, 지하철, 공항, 항만), ②에너지 분야(에너지 생산, 유통 및 공급), ③용수 분야(상수도, 댐, 저수지), ④환경 분야(하수도, 폐기물 처리 등) 해당

※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사업자 등이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·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

□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시책

- ▶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취약한 계층 및 지역을 보호·지원함으로써 기후탄력성* 제고

* 기후탄력성(climate resilience):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·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러한 피해로부터 회복하는 집단적 역량



- **사회안전망** 고용안정, 실업지원, 사업전환 지원 등 종합적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강화
- **경제적 지원**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큰 취약지역을 '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' 지정·지원, 지원기구 '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' 설립·운영
- **기타** 탄소중립 이행 활성화를 위한 국민참여 보장, 협동조합 지원 등

□ 녹색성장 시책

▶ 녹색경제 구현 및 녹색산업 육성·지원 등을 통해 사회·경제 전반의 녹색전환 추진

- 기업의 녹색경영과 녹색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 촉진
 - ※ 체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·금융지원 방안 마련,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예정
- 국가 경제구조의 녹색전환 기반 마련
 - ※ 녹색기술·산업 표준화 기반 구축, 녹색일자리 창출, 녹색재화·서비스 촉진하는 조세제도 등

3 기반

□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의 사회적 기반 마련

- **실천연대**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법정 조직으로 구성되어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을 위해 관계 중앙부처와 공동 협력
- **지원센터** 지역 기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·확산할 전문기관 지정·운영
- **생활확산**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'탄소중립실천포인트' 제도 시행

□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의 사회적 기반 마련

- **재정적 기반**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 소요재원 마련을 위한 기후 대응기금 신설·운영
 - ※ 2022년 기준 총 2.4조원 규모로 편성, ①온실가스 감축, ②신유망·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, ③공정한 전환, ④제도·기반구축 등 4대 핵심분야 중점 지원
 - ※ 녹색금융·기술개발 투자를 지속 확대하되 온실가스 감축효과 극대화 사업을 최우선 지원



Ⅲ. 시사점

- ▶ ‘기후변화영향평가’, ‘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’ 법제화에 따라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 기후변화 관련 평가·컨설팅 산업 활성화 필요
- ▶ 도시·지역 단위 온실가스 감축 정책* 및 농림수산 전환 시책**에 따라 정보통신기술(ICT) 기반 스마트시티·스마트팜 구축 확대 예상
 - * 탄소중립도시 지정, 지역 에너지 전환, 녹색건축물 확대, 녹색교통 활성화 등
 - ** 농림수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, 신재생에너지 보급, 농림수산업 여건 변화 예측 등
- ▶ ‘기상정보관리체계’ 구축·운영을 위해 기상기후 데이터 분야 등 관련 분야 전문교육 중요성 및 수요 확대* 기대
 - * ‘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’ 수립 시 기상정보관리체계의 역할인 ‘기후위기 감시·예측·제공·활용’ 능력 향상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분야 역량 강화 필요
- ▶ 국가·지자체 및 공공기관* ‘기후위기 적응대책’ 수립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과 기상기후 분야 간 업무협력 확대 가능
 - * 교통·수송 분야, 에너지 분야, 용수 분야, 환경 분야 등 기후위기 취약기관 등
- ▶ ‘기후대응기금’을 통해 산업구조 개편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 질 것이므로 기상산업의 기금 활용 방안 마련 필요

※ [참고자료] 환경부 보도자료 ‘탄소중립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의지 법제화, 2050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갑니다.
-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기본법 시행(3.25.)’

